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72,227,698	62,166,831
일반회계	1,857,560,847	55,726,825
특별회계	214,666,851	6,440,006
공기업특별회계	177,727,533	5,331,8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970,107	2,519,1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757,426	2,812,723
기타특별회계	36,939,318	1,108,180
주택사업특별회계	98,000	2,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046,216	331,386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80,592	104,418
교통사업특별회계	18,320,392	549,612
대지보상특별회계	30,000	900
수질개선특별회계	3,260,118	97,804

제 2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